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3호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위성항법시설의 위탁기관 요건 및 관리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22.12.11.)으로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성항법시설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요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충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 항행안전시설 위성항법시설 전문운영기관 위탁기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위탁기준, 심사, 위원회 구성·운영,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7조)

다. 전문운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위탁취소 등 관리기준(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우)30103)
- 전자우편 : hjs4869@korea.kr
- 팩스 : 044-201-5637(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행위성정책과(전화 (044) 201 - 4358, 팩스 044-201-56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